

# ‘2002년도 냉장육 유통관련 개정사항

■ ‘2002년도 냉장육 관련 고시 및 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“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” 개정 고시  
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2- 3호(2002. 6.15)  
 제1.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
 8. 보존 및 유통기준

현 행	개 정
거.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<u>아니되며,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.</u>	거.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.

- “축산물의 표시기준” 개정 고시  
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2-5호(2002. 6.26)

제4조(표시사항)

[별표 1]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

- 1. 축산물의 일반기준
  - 가. 축산물가공품(수입축산물을 포함한다)
    - (11) 기타 표시사항 중  
 (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현 행	개 정
(타)	(타)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“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.”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- “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” 중 개정령  
농림부령 제1424호 (2002. 8. 5)

[별표 12]

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
(제51조제1항관련)

4.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준수사항  
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현 행	개 정
	사.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·도지사에게 전환 품목명·중량·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,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[별표 13]

축산물보관업·축산물운반업·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
(제51조제2항관련)

3. 축산물판매업영업자의 준수사항  
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현 행	개 정
	타.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환품목명·중량·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,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